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5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3월 5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 기준 (60%)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면서 법과 달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, 이는 동 개정조례안이 법보다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.

따라서 성별비율 기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7조제6항의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 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” 로 수정함.(안 제7조제6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6항 중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생략) <신설>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 는 경우에는 <u>특정 성별</u>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 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 는 경우에는 「양성평 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 2항에 따라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하여야 한 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「양성평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「양성평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</u></p>